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2. 4 선고 2023가단626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대한민국

피고A

소송대리인 B

변론 종결2024. 9. 11.

판결 선고2024. 12. 4.

주 문

1. 피고 A과 소외 B 사이에 2021. 4. 30. 체결된 60,000,000원의 자기앞수표(C조합석창지점 2021. 4. 27. 발행, 수표번호: D)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B(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는 2022. 8. 1. 여수세무서에 이 사건 채무자로부터 2021. 4. 30. C조합석창지점이 2021. 4. 27. 발행한 60,000,000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채무자는 2021. 4. 30. 기준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서초	부가가치세	2003.2기	2003.12.31.	2014.07.01.	40,317,700	제2차 납세의무
여수	부가가치세	2016.1기	2016.06.30.	2019.05.31.	66,419,790	
여수	종합소득세	2016년	2016.12.31.	2019.06.30.	3,983,480	
합계	110,720,970					

라. 이 사건 채무자의 2021. 4. 30. 기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적극재산	예금(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0,060원	갑 제5-1호증
예금(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19,088원	갑 제5-1호증	
예금(C조합)	(계좌번호 3 생략)	98,402원	갑 제5-2호증	
소계	127,550원			
소극재산	조세채무		110,720,970원	
사해행위	이 사건 증여계약		60,000,000원	
적극재산 - 소득재산 - 사해행위	-170,593,42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이 사건 채무자 사이에 2021. 4. 30. 체결된 60,000,000원권 자기앞수표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무자가 2021. 4. 27. 무렵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위해 소외 G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가 같은 달 28. 이를 건네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외 G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일 뿐, 이 사건 채무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22년경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질의를 받고는 당황하여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감면되니 그렇게 신고하라는 지인의 조언에 따라 허위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G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백주연

별지